

안전관리규정

2022.04.29.제정

<시설안전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운영한다.

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사무처장, 안전관리자는 시설안전팀장이 되며, 각 부서별 관리감독자는 부서장으로 하되, 별도의 정, 부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
2. 사고발생 시 사고 조사와 대책수립
3. 안전점검, 지도 및 안전교육과 홍보활동
4. 재난위험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
5.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4조(위원회 등) 재난위험시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「재난위험시설위원회 운영 규정」을 따른다.

제5조(안전활동) ① 교육시설물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(반기 1회이상)과 소방훈련 및 동절기, 하절기, 해빙기 시기 전,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요소 등을 분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며,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한다.

②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재학생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
③ 재해 취약시설 및 그 밖의 위험지역에는 필요한 안전표시를 설치한다.

제6조(재해발생시 긴급대책) 교육시설물 사고의 우려가 큰 주요부분은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하기 위한 위험 및 출입금지 표지를 하고 각종 안전장치와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.

제7조(재해발생시 사고대책위원회) 교육시설물 재난위험시설의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재난위험시설위원회에서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및 운영한다.

제8조(회의) 안전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1. 안전점검 및 활동 강화에 대한 업무 협조

2. 안전업무 수행상 문제점의 분석

3.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9조(보고) 교육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